#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6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임이자·김종양·정희용

박충권 • 유용원 • 김형동

최수진 • 김소희 • 이철규

구자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보존해야 할 의 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 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등).

#### 법률 제 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으로 하고,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 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측정 결과를 4년 이상 기록·보존하고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을 준수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①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등이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우수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
  - 2.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③ 우수시설의 재지정 취소는 제12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한다.
- 제13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2조의3제3항"을 "제12조의5

제3항"으로 한다.

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재지정 취소 제16조제3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12조의3항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또는 제12조의4제1항 에 따른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
	시설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
	관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
	<u>적한 공기질 유지·관리를 도</u>
	모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
	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측정 결과를
	<u>4년 이상 기록・보존하고 환경</u>
	부렁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을
	준수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다중이
	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
	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
	<u>다.</u>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
	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
	<u>년으로 한다.</u>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또는 지 정 취소의 절차 ·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 시설의 재지정 등) ① 우수시 설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등 이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 여 우수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 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재지정 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신 설>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대

사항을 평가하여 4년 이내의

-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
- 2.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 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항
- ③ 우수시설의 재지정 취소는 제12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한다.

제12조의5 · 제12조의6 (현행 제1 2조의3 및 제12조의4와 같음) 제13조의2(청문) -----

-----

<u>제12조의3</u>·<u>제12조의4</u> (생 략)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신 설>

- 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 제16조(과태료) ①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8의2. (생략)

<u><신 설></u>

9. · 10. (생략)

④ (생략)

_	_	-	_	_	_	
						٠

- 1. (현행과 같음)
- 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따른 우수시설의 지정·재지정 취소
- 3. 제12조의5제3항-----

--

제1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
- 1. ~ 8의2. (현행과 같음)
- 8의3. 제12조의3항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또는 제12 조의4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9. 10.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